



제 422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주체의 기준 변경 등〉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17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주체의 기준 변경 .....        | 3  |
|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취소 시 승인지역 해제 명시 ....   | 16 |
| 3. 부칙 .....                                  | 23 |
| ※ 참고자료                                       |    |
| [참고] 수혜면적 30~50ha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사업 대상지 목록 ... | 26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정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 15.

3. 회 부 일 : 2025. 1. 1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도록 하고,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작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그 지역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서 행위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에서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등을 지역·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로 규정하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속하여 행위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여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17조제1항제3호 신설).

### Ⅲ. 검토의견

##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주체의 기준 변경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는 기준을 사업의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 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 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사업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u>50만 제곱미터</u>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 계획의 수립) ① -----<br>-----<br>-----<br>-----<br>-----<br>----- . -----<br>-----<br>-----<br>-----<br>-----<br><u>30만 제곱미터</u> -----<br>-----<br>-----<br>----- . |
| 1. 사업지역이 1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br>2. 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 현행                                                                                                                                                                                                                                                                                                                                                                                                                                                                                                                                                                                                                                                                                                                        | 개정안 |
|---------------------------------------------------------------------------------------------------------------------------------------------------------------------------------------------------------------------------------------------------------------------------------------------------------------------------------------------------------------------------------------------------------------------------------------------------------------------------------------------------------------------------------------------------------------------------------------------------------------------------------------------------------------------------------------------------------------------------|-----|
| 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     |
| <p>※ 관계 조문</p> <p>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별 예정지 조사의 실시 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p> <p>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p> <p>가. 수혜면적(受惠面積)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일 것</p> <p>나. 다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일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촌용수 개발사업</li> <li>2) 경지 정리사업</li> <li>3) 배수 개선사업</li> <li>4) 간척사업</li> <li>5) 매립사업</li> </ol> <p>2. 제1호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시·도지사</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p> |     |

## 가. 관계기관 의견

### 1)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수혜면적 규모 변경을 통하여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 위기 및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에 대응하고 농업생산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용함.

### 2) 기획재정부

별다른 의견 제출 없음.

### 3) 한국농어촌공사

개정안을 통하여 국가의 재해예방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저감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수용함.

## 나. 검토의견

###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제도 현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sup>1)</sup>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 및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행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가목부터 사목까지 일곱가지 항목으로 구분함.

#### < 현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종류 >

| 연번 | 사업 내용                                                   |
|----|---------------------------------------------------------|
| 1  |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
| 2  |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
| 3  |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
| 4  |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                               |
| 5  | 저수지,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
| 6  |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
| 7  |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11.

####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주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는 배수개선, 농촌용수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방조제 개보수 등의 사업이 있음.

### < 주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 사업명             | 사업 내용                                                                                                                                                                                                                                                                    | 시설 등 사진                                                                             |                                                                                      |                                                                                       |
|-----------------|--------------------------------------------------------------------------------------------------------------------------------------------------------------------------------------------------------------------------------------------------------------------------|-------------------------------------------------------------------------------------|--------------------------------------------------------------------------------------|---------------------------------------------------------------------------------------|
| 배수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수 불량한 농지의 배수개선과 집중호우시 상습침수되는 농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li> </ul>                                                                                                                                               |    |    |    |
| 농촌용수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li> <li>○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 가뭄상습 농경지에 대해 저수지, 양수장 및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신규·증설하는 사업</li> <li>○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 기존 저수지·담수호의 여유 수자원을 수자원이 부족한 저수지로 용수를 배분·활용하기 위해 양수장, 용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li> </ul> |   |   |   |
|                 |                                                                                                                                                                                                                                                                          |  |  |  |
| 수리시설 개보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파손 및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한 저수지, 양·배수장 등을 보수·보강하고, 흙수로 구조물화 및 수리시설을 안전진단하는 사업</li> </ul>                                                                                                                                                |  |  |  |
|                 |                                                                                                                                                                                                                                                                          |  |  |  |
|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풍, 해일 및 파랑 등에 취약한 노후 방조제 및 배수갑문 등을 보수·보강하는 사업</li> </ul>                                                                                                                                                                       |  |  |  |

| 사업명                      | 사업 내용                                                                                                                                                                               | 시설 등 사진                                                                             |                                                                                      |                                                                                       |
|--------------------------|-------------------------------------------------------------------------------------------------------------------------------------------------------------------------------------|-------------------------------------------------------------------------------------|--------------------------------------------------------------------------------------|---------------------------------------------------------------------------------------|
| 가뭄대비<br>용수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뭄 발생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정, 하천굴착 등 긴급용수원 개발과 가뭄을 사전예방을 위한 양수저류시설 설치 지원(가뭄대책)</li> </ul>                                                        |    |    |    |
|                          |                                                                                                                                                                                     | 관정                                                                                  | 송수호스                                                                                 | 양수 저류                                                                                 |
| 수리시설<br>유지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農公 관리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급·배수관리 및 시설운영비 지원</li> </ul> <p>* 면적 476천ha, 용·배수로 99천km 수리시설 14천개소</p>                                                     |    |    |    |
|                          |                                                                                                                                                                                     | 보수하고 있는 양수장                                                                         | 정비된 양수장 내부                                                                           | 용수로                                                                                   |
| 농업기반<br>시설<br>치수능력<br>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저수지, 방조제의 홍수배제능력 향상을 위해 물넘이 또는 배수갑문을 확장하는 사업</li> </ul> <p>* 예당저수지, 이동저수지, 삼교천방조제, 불갑저수지 등</p>                                             |    |    |    |
|                          |                                                                                                                                                                                     |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                                                                        | 삼교천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 불갑저수지 물넘이 확장                                                                          |
| 농촌용수<br>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사업</li> </ul> <p>*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수질조사 및 개선, 지하수 자원관리사업 등</p>                                                           |  |  |  |
|                          |                                                                                                                                                                                     |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 수질 개선                                                                                | 지하수 관정                                                                                |
| 대단위<br>농업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천수계 중심으로 권역화하여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 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li> </ul> <p>* 금강Ⅱ, 영산강Ⅳ, 홍보, 서산 A, 금강영농편의, 영산강Ⅲ-1, 화옹, 시화</p>                   |  |  |  |
|                          |                                                                                                                                                                                     | 영산강 하굿둑                                                                             | 무안양수장 (영산강Ⅳ지구)                                                                       | 영암 방조제                                                                                |
| 새만금<br>간척종합<br>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닷물을 차단하는 방조제(33.9km)와 농지를 보호하는 방수제(62.1km)를 축조하여 내부간척지에 농생명용지(9,430ha)를 조성하는 간척종합개발사업</li> </ul> <p>*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첨단 농업단지 및 농촌도시·마을 등</p> |  |  |  |
|                          |                                                                                                                                                                                     | 새만금 항공사진                                                                            | 내부개발 중                                                                               | 농업용지 5공구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2025. 2. 1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②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절차는 크게 일곱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절차 >

|                 | 추진절차                  | 시행주체                    | 절차내용                               |
|-----------------|-----------------------|-------------------------|------------------------------------|
| 제7조             | ① 예정지조사<br>↓          | 농식품부<br>시·도             | 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조사               |
| 제8조             | ②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br>↓ | 농식품부<br>시·도             |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
| 제9조제1항          | ③ 사업시행자 지정<br>↓       | 농식품부<br>시·도             | 사업시행의 주체를 지정                       |
| 제9조제2항          | ④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br>↓ | 사업시행자<br>(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사 착공이 가능한 상세 설계 및 계획 수립 |
| 제9조제7항<br>제105조 | ⑤ 사업시행계획 승인·고시<br>↓   | 농식품부<br>시·도             | 시행계획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예산 지원 등을 승인·고시   |
| 제10조            | ⑥ 사업시행<br>↓           | 사업시행자<br>(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 공사 착공 등                            |
| 제114조           | ⑦ 준공                  | 농식품부<br>시·도             | 공사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2025. 2. 6. (일부 재가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조사를 수행하고, ② 기본조사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③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④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함.

⑥ 사업시행계획이 승인된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고, ⑦ 사업을 마치면 사업시행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 후 준공인가를 받음.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중 어느 기관이 ① 예정지조사를 수행하고, ② 기본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지는 사업의 종류나 사업에 따른 수혜면적의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됨.

가령,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시·도지사가 수행함. 그러나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함.

###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 수행주체 >

| 연번 | 구분    | 수행주체                                                                                          |                 |
|----|-------|-----------------------------------------------------------------------------------------------|-----------------|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시·도지사           |
| 1  | 예정지조사 |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3,000ha) 이상이면서                                                                 | 그 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    |       | ① 농어촌용수 개발사업<br>② 경지 정리사업<br>③ 배수 개선사업<br>④ 간척사업<br>⑤ 매립사업<br>사업 중 2개 이상으로 구성된<br>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

| 연번 | 구분                | 수행주체            |                                                                                          |
|----|-------------------|-----------------|------------------------------------------------------------------------------------------|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시·도지사                                                                                    |
| 2  | 기본조사 및<br>기본계획 수립 | 그 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①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br>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br><br>②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br>(50ha) 미만인<br>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 3  | 사업시행자 지정          |                 |                                                                                          |
| 4  | 사업시행계획<br>승인·고시   |                 |                                                                                          |
| 5  | 준공인가              |                 |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11.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이러한 법률상의 수혜면적 기준(50만제곱미터)은 지난 2023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sup>2)</sup>을 통하여 신설되었음.

정부가 제출하여<sup>3)</sup> 우리 위원회의 대안<sup>4)</sup>에 반영된 50만제곱미터의 수혜면적 기준은, 2020년 12월 18일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포함한 시·도 위임사무 등(36개의 법률, 261개 사무)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한 데 따른 것임.<sup>5)</sup>

참고로 법률 개정 전에도,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6조를 통하여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위임되고 있었음.

2) 2023. 2. 27. 본회의 의결, 2023. 3. 28. 공포, 2023. 6. 29. 시행

3) 의안번호 211455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4) 의안번호 212007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114551) 검토보고서”, 2022. 4.

## < 2023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효과 >

| 구분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권자              |                               |
|------|-------------------------------------|-------------------------------|
|      |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                     |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 <sup>6)</sup> |
| 개정 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시·도지사<br>(시행령에 따른 기관위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개정 후 | 시·도지사                               |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11.

한편, 시·도지사가 권한을 가지는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경우, 2019년 12월 2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sup>6)</sup>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sup>7)</sup>에 포함되었음.

이에 따라 현재는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국고 지원 없이<sup>8)</sup> 지방비 100%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 권한주체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비용부담 >

| 권한주체      | 수혜면적 기준    | 비용부담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50만제곱미터 이상 | 국비 100% (농특회계·지특회계 <sup>9)</sup> ) |
| 시·도지사     | 50만제곱미터 미만 | 지방비 1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2025. 2. 11. (재가공)

6) 단,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을 제외함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165. 농어업기반 정비

8) 시행령 개전 이전까지는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소규모 배수개선은 80%, 소규모 용수개발은 70% 등의 국고 지원이 가능하였음

9) 지특회계에는 배수개선 사업이 해당하는데, 기존에는 농특회계였으나 2025년부터 지특회계로 변경되었음

## 2) 검토의견

최근 기후위기에 따라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농경지의 용수공급 및 침수 예방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따라 농촌용수 개발사업, 배수개선 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수요가 증가함.

현행법 제8조<sup>10)</sup>는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50헥타르(ha)<sup>11)</sup>] 미만인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또한 해당 정비사업의 경우, 모든 재원을 지방비를 통하여 마련함.

그런데, 중앙정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지역 내에 배수개선 등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요구됨에도 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전라남도, 충청남도(논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으로서, 수혜면적 기준의 하향 조정(50ha → 30ha)을 통한 국비지원 기준 확대를 건의함.

---

10) 「농어촌정비법」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사업지역이 1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
2. 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 1헥타르(ha) = 10,000제곱미터( $m^2$ ) (≒ 3,025평 ≒ 축구장 크기의 1.4배)

##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관련 국가 지원확대 건의 사례 >

| 연도    | 건의 지자체              | 건의내용                                                                                 |
|-------|---------------------|--------------------------------------------------------------------------------------|
| 2023년 | 전라남도                | - 지방재정 부족으로 상습 침수지역 해소가 어려워, 배수개선사업의 국비지원 기준을 수혜면적 <u>50ha 이상에서 30ha 이상</u> 으로 조정 건의 |
| 2024년 | 충청남도 <sup>12)</sup> | - 50ha 미만 지역은 지방비 시행으로 지자체 부담이 커, 국비로 할 수 있는 배수개선사업 대상기준을 <u>30ha로 완화</u> 건의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2025. 2. 11. (재가공)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혜면적 기준을 기존의 50만 제곱미터에서 30만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이는 경지 정리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50만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업의 재원을 지방비에서 국비로 변경하여, 국가 주도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① 배수개선 사업과 ② 농촌용수 공급사업의 경우, 수혜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예정지가 다음과 같이 추산되고 있음.

12)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건의사항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 논산시로부터도 있었음

### < 수혜면적이 10ha~50ha인 배수개선 및 농촌용수개발 예정지 >

| 구분     | 계        | 10ha~20ha | 20ha~30ha | 30ha~40ha | 40ha~50ha |
|--------|----------|-----------|-----------|-----------|-----------|
| 배수개선   | 349개 지구  | 21개 지구    | 70개 지구    | 124개 지구   | 134개 지구   |
|        | 12,216ha | 296ha     | 1,846ha   | 4,094ha   | 5,980ha   |
| 농촌용수개발 | 301개 지구  | 159개 지구   | 98개 지구    | 21개 지구    | 23개 지구    |
|        | 6,490ha  | 2,307ha   | 2,424ha   | 723ha     | 1,036ha   |

주: 50ha 미만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여 전반적인 예정지 실태조사 결과는 없으나,  
침수발생지역, 가뭄분석 예측결과 등을 활용하여 예정지를 추정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2025. 2. 11. (재가공)

이 중에서 사업에 따른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30ha) 이상 50만제곱미터(50ha) 미만인 예정지는 각각 ① 배수개선 258개 지구(10,074.8ha, 1조 74억원), ② 농촌용수개발 44개 지구(1,758.4ha, 3,020억 6,000만원)로, 총 302개 지구(11832.4ha, 1조 3,094억 6,000만원)가 해당함.

### < 광역지자체별 30ha~50ha 배수개선 및 농촌용수개발 예정지 >

| 지자체 | 배수개선 사업 |            |         | 농촌용수개발 사업 |           |           |
|-----|---------|------------|---------|-----------|-----------|-----------|
|     | 지구 수    | 수혜면적       | 예상사업비   | 지구 수      | 수혜면적      | 예상사업비     |
| 총계  | 258개 지구 | 10,074.8ha | 1조 74억원 | 44개 지구    | 1,758.4ha | 3,020.6억원 |
| 경기  | 26개 지구  | 977.0ha    | 977억원   | -         | -         | -         |
| 강원  | 4개 지구   | 155.0ha    | 155억원   | 1개 지구     | 43.2ha    | 119.3억원   |
| 충북  | 8개 지구   | 297.0ha    | 297억원   | 2개 지구     | 89.0ha    | 127.5억원   |
| 충남  | 25개 지구  | 953.8ha    | 953억원   | 7개 지구     | 254.0ha   | 240억원     |
| 전북  | 22개 지구  | 831.0ha    | 831억원   | 2개 지구     | 66.0ha    | 67.9억원    |
| 전남  | 81개 지구  | 3,235.0ha  | 3,235억원 | -         | -         | -         |
| 경북  | 35개 지구  | 1,393.0ha  | 1,393억원 | 32개 지구    | 1,306.2ha | 2465.9억원  |
| 경남  | 42개 지구  | 1,647.0ha  | 1,647억원 | -         | -         | -         |
| 제주  | 15개 지구  | 586.0ha    | 586억원   | -         | -         | -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전략본부 기획조정실, 2025. 2. 4. (재가공)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기준이 50만제곱미터(50ha)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30ha)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이들 지구에서 시·도지사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도의 배수개선 사업, 농촌용수개발 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진행이 이루어짐.

그 결과, 배수개선 사업에서 1조 74억원, 농촌용수개발 사업에서 3,020억 6,000만원으로 총 1조 3,094억 6,000만원 가량의 사업비가 지방비가 아닌 국비를 통하여 집행될 것이 예상됨.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덜어지고, 국가 주도로 보다 선제적이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취소 시 승인지역 해제 명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다음 날에 승인지역에서 해제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7조(지정 해제) ① 지역·지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117조(지정 해제) ① -----<br>-----<br>-----<br>-----.    |
| 1.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                                                            | 1. (현행과 같음)                                         |
| 2.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 2. (현행과 같음)                                         |
| <신 설>                                                                                                                                                    | 3.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 |
| 3. 지역·지구등에서의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 4. (현행 제3항과 같음)                                     |
| ※ 관계 조문                                                                                                                                                  |                                                     |
|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
|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                                                     |
|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해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 ⑤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                                                     |

| 현 행 | 개 정 안                                                                                                                                                                                                                                                                                                                                                                                                                                                                                                                                                                                       |
|-----|---------------------------------------------------------------------------------------------------------------------------------------------------------------------------------------------------------------------------------------------------------------------------------------------------------------------------------------------------------------------------------------------------------------------------------------------------------------------------------------------------------------------------------------------------------------------------------------------|
|     | <p>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p> <p>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결정·확정 등이 있으면 해당 마을정비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p> <p>③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해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p>                                                                                                                                                                                                                                                                          |

## 가. 관계기관 의견

###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에서 시행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날의 다음 날에 지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토지 등의 이용자가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수용함.

### 2) 한국농어촌공사

개정안은 사업이 취소된 이후에 행위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용함.

## 나. 검토의견

기본계획을 수립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현행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는 사업을 시행하기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설계를 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절차 >

|                 | 추진절차                  | 시행주체                    | 절차내용                               |
|-----------------|-----------------------|-------------------------|------------------------------------|
| 제7조             | ① 예정지조사<br>↓          | 시·도                     | 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조사               |
| 제8조             | ②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br>↓ | 농식품부<br>시·도             |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
| 제9조제1항          | ③ 사업시행자 지정<br>↓       | 농식품부<br>시·도             | 사업시행의 주체를 지정                       |
| 제9조제2항          | ④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br>↓ | 사업시행자<br>(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사 착공이 가능한 상세 설계 및 계획 수립 |
| 제9조제7항<br>제105조 | ⑤ 사업시행계획 승인·고시<br>↓   | 농식품부<br>시·도             | 시행계획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예산 지원 등을 승인·고시   |
| 제10조            | ⑥ 사업시행<br>↓           | 사업시행자<br>(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 공사 착공 등                            |
| 제114조           | ⑦ 준공                  | 농식품부<br>시·도             | 공사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2025. 2.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현행법 제105조13)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14)에 따라 사업지역의 지형도면 등을 고시함.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현행법 제105조에 따른 지역·지구등에 해당하게 됨.

13) 「농어촌정비법」

제105조(사업지역·지구의 고시 등)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구역·단지·지구(이하 “지역·지구등”이라 한다)의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에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에서는 현행법 제111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됨.<sup>15)</sup>

해당 지역에서 ① 건축물의 건축, ② 인공구조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석의 채취, ⑤ 토지분할, ⑥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⑦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러한 행위제한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라는 공용필요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임.<sup>16)</sup>

###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지역 내 행위 제한 >

| 구분    | 내용(세부내용)                                         |
|-------|--------------------------------------------------|
| 대상 지역 | 현행법 제9조 및 제105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 |

#### 15) 「농어촌정비법」

제111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① 지역·지구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87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구조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16)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349.

| 구분       | 내용(세부내용) |              |                                                        |
|----------|----------|--------------|--------------------------------------------------------|
| 제한<br>행위 | 1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대수선<br>또는 용도변경                      |
|          | 2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br>시설물(건축물 제외)의 설치                         |
|          | 3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br>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 굴착, 공유수면 매립 |
|          | 4        | 토석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          | 5        | 토지 분할        | -                                                      |
|          | 6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          | 7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12.

그런데 현행법 제117조는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만을 규정함.

이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지역이 해제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여전히 행위 제한 등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역·지구등의 해제와 관련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된 날의 다음날에 지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해제 여부를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현행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행계획의 승인 취소에 따라 해당 지역이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지구등에서 해제되는

지 여부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의 경우에도 계획승인의 취소가 있는 경우, 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을 확보함.

### < 유사 입법례: 계획승인의 취소와 구역의 해제 >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2025. 2. 6.

### 3. 부칙

개정안은 그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수혜면적 30만제곱미터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부칙).

| 개 정 안                                                                                       |
|---------------------------------------------------------------------------------------------|
|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가. 관계기관 의견

##### 1)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령의 정비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개정안 부칙 제1조를 수용함.

안 제8조제1항은 개정안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안 부칙 제2조를 수용함.

##### 2)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의 재해예방 지원 역할의 확대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목적 달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부칙을 수용함.

## 나. 검토의견

### 1) 안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혜면적의 기준이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화하게 됨.

현행법 시행령 제8조제3항17)에서는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준을 현행법 제8조제1항의 기준에 대응하여 5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함.

따라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하위법령 개정이 요구될 것이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2) 안 부칙 제2조(적용례)

개정안은 이 법 시행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혜면적 기준을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 예정지에 대하여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의 기본계획도 수립하게 됨.

---

17) 「농어촌정비법」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중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같은 호 나목의 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개수·보수와 준설(浚渫)의 경우에는 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에 포함된다]과 같은 호 라목 및 사목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라,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는 총 302개 지구인데, 현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데, 302개 지구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직접적인  
법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416 |

## 참고자료

## 수혜면적 30~50ha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사업 대상지 목록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전략본부 기획조정실, 2025. 2. 13.

### 1. 배수개선사업 (자체추산)

| 지구명 | 위치    |    |     |     | 수혜면적<br>(ha) | 사업비<br>(억원) | 사업시행예정자 | 비고     |
|-----|-------|----|-----|-----|--------------|-------------|---------|--------|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 총 계 | 258지구 |    |     |     | 10,074.8     | 10,074      |         |        |
| 경기  | 26지구  |    |     |     | 977.0        | 977         |         |        |
| 구산  | 경기    | 고양 | 일산  | 구산  | 33           | 33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원예) |
| 장지  | 경기    | 광주 |     | 장지  | 30           | 30          | 광주시     | 신규(원예) |
| 매화  | 경기    | 시흥 |     | 매화  | 32           | 32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내리  | 경기    | 안성 | 대덕  | 내   | 40           | 40          | 안성시     | 신규(원예) |
| 신령  | 경기    | 안성 | 대덕  | 신령  | 36           | 36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월정2 | 경기    | 안성 | 일죽  | 월정  | 34           | 34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계정  | 경기    | 양평 | 양동  | 계정  | 48           | 48          | 양평군     | 신규(원예) |
| 고송  | 경기    | 양평 | 양동  | 고송  | 45           | 45          | 양평군     | 신규(원예) |
| 원덕  | 경기    | 양평 | 양평  | 원덕  | 45           | 45          | 양평군     | 신규(원예) |
| 이호  | 경기    | 여주 | 강천  | 이호  | 42           | 42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금사  | 경기    | 여주 | 금사  | 금사  | 37           | 37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매화  | 경기    | 여주 | 능서  | 매화  | 43           | 43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장안1 | 경기    | 여주 | 점동  | 장안1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문장  | 경기    | 여주 | 홍천  | 문장  | 37           | 37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효지  | 경기    | 여주 | 홍천  | 효지  | 34           | 34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고문  | 경기    | 연천 | 연천  | 고문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장평  | 경기    | 이천 | 대월  | 장평  | 46           | 46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소고  | 경기    | 이천 | 모가  | 소고  | 40           | 4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어농  | 경기    | 이천 | 모가  | 어농  | 42           | 42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행죽  | 경기    | 이천 | 설성  | 행죽  | 31           | 31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원예) |
| 용풍  | 경기    | 이천 | 장호원 | 풍계  | 42           | 42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안평  | 경기    | 이천 | 호법  | 안평  | 40           | 40          | 이천시     | 신규(원예) |
| 단월2 | 경기    | 이천 |     | 단월2 | 35           | 35          | 이천시     | 신규(원예) |
| 운천  | 경기    | 포천 | 영북  | 운천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검하  | 경기    | 파주 | 검산  |     | 45           | 45          | 한국농어촌공사 | 타작물    |
| 고잔2 | 경기    | 평택 | 청북  | 고잔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타작물    |

| 지구명         | 위치   |    |    |     | 수해면<br>적<br>(ha) | 사업비<br>(억원) | 사업시행예정자 | 비고     |
|-------------|------|----|----|-----|------------------|-------------|---------|--------|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 강원          | 4지구  |    |    |     | 155              | 155         |         |        |
| 판교          | 강원   | 강릉 | 사천 | 사천진 | 35               | 35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동호          | 강원   | 고성 | 간성 | 동호  | 46               | 46          | 고성군     | 보강(벼)  |
| 도원          | 강원   | 영월 | 수주 | 도원  | 37               | 37          | 영월군     | 신규(벼)  |
| 장열          | 강원   | 정선 | 북평 | 장열  | 37               | 37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충북          | 8지구  |    |    |     | 297              | 297         |         |        |
| 호서루         | 충북   | 영동 | 심천 | 약목  | 35               | 35          | 영동군     | 신규(원예) |
| 석장          | 충북   | 진천 | 덕산 | 석장  | 47               | 47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송림          | 충북   | 진천 | 이월 | 내촌  | 35               | 35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가산          | 충북   | 진천 | 진천 | 가산  | 42               | 42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금곡          | 충북   | 진천 | 초평 | 금곡  | 32               | 32          | 진천군     | 신규(원예) |
| 석화2         | 충북   | 청원 | 강내 | 석화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황탄          | 충북   | 청원 | 강내 | 황탄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신대          | 충북   | 청주 | 홍덕 | 신대  | 46               | 46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원예) |
| 충남          | 25지구 |    |    |     | 953.8            | 953         |         |        |
| 만수          | 충남   | 공주 | 이인 | 만수  | 30               | 30          | 공주시     | 보강(벼)  |
| 장구2         | 충남   | 논산 | 광석 | 신당  | 45               | 45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원예) |
| 신당          | 충남   | 논산 | 광석 | 오강  | 43               | 43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원예) |
| 우곤2         | 충남   | 논산 | 성동 | 우곤  | 49.8             | 49.8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원예) |
| 초락          | 충남   | 당진 | 석문 | 초락도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송악          | 충남   | 당진 | 송악 | 봉교  | 45               | 45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송산1         | 충남   | 당진 | 송산 | 동곡  | 39               | 39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동방(동방)      | 충남   | 부여 | 구룡 | 동방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원예) |
| 용당          | 충남   | 부여 | 구룡 | 용당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원예) |
| 라복2         | 충남   | 부여 | 규암 | 진변  | 40               | 40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원예) |
| 송학(송학)      | 충남   | 부여 | 남  | 송학  | 39               | 39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서당<br>(봉두정) | 충남   | 부여 | 석성 | 봉정  | 32               | 32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내성          | 충남   | 부여 | 양화 | 시읍  | 40               | 4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원당          | 충남   | 부여 | 양화 | 원당  | 40               | 40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원예) |
| 칠산          | 충남   | 부여 | 임천 | 비정  | 44               | 44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원예) |
| 송국          | 충남   | 부여 | 초촌 | 송국  | 43               | 43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대산          | 충남   | 서산 | 대산 | 대로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귀밀          | 충남   | 서산 | 해미 | 귀밀  | 40               | 4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지구명  | 위치   |    |     |              | 수혜면<br>적<br>(ha) | 사업비<br>(억원) | 사업시행예정자 | 비고     |
|------|------|----|-----|--------------|------------------|-------------|---------|--------|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 서령   | 충남   | 서산 |     | 석남           | 31               | 31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잠홍   | 충남   | 서산 |     | 잠홍           | 40               | 40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대하   | 충남   | 서천 | 화향  | 대하           | 41               | 41          | 서천군     | 신규(벼)  |
| 죽천   | 충남   | 예산 | 신양  | 죽천           | 31               | 31          | 예산군     | 신규(벼)  |
| 서계양  | 충남   | 예산 | 신양  | 서계양          | 42               | 42          | 예산군     | 보강(원예) |
| 금곡   | 충남   | 홍성 | 결성  | 금곡           | 43               | 43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와룡   | 충남   | 홍성 | 갈산  | 교향           | 36               | 36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전북   | 22지구 |    |     |              | 831              | 831         |         |        |
| 목동   | 전북   | 고창 | 아산  | 대동           | 32               | 32          | 고창군     | 신규(벼)  |
| 상동   | 전북   | 김제 | 백산  | 상동           | 48               | 48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장기   | 전북   | 무주 | 안성  | 장기           | 33               | 33          | 무주군     | 신규(원예) |
| 운산   | 전북   | 부안 | 변산  | 운산           | 49               | 49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구산   | 전북   | 순창 | 구림  | 구산           | 30               | 30          | 순창군     | 신규(원예) |
| 금월   | 전북   | 순창 | 북흥  | 농암           | 47               | 47          | 순창군     | 신규(벼)  |
| 복실   | 전북   | 순창 | 순창  | 복실           | 48               | 48          | 순창군     | 신규(벼)  |
| 교전   | 전북   | 완주 | 고산  | 읍내           | 35               | 35          | 완주군     | 신규(벼)  |
| 하리   | 전북   | 완주 | 삼례  | 하리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원예) |
| 두산   | 전북   | 장수 | 장수  | 두산           | 40               | 40          | 장수군     | 신규(원예) |
| 원송천  | 전북   | 장수 | 장수  | 송천           | 49               | 49          | 장수군     | 신규(원예) |
| 용계   | 전북   | 장수 | 장수  | 용계           | 42               | 42          | 장수군     | 신규(원예) |
| 배미실  | 전북   | 전주 | 호성  | 호성           | 30               | 30          | 전주시     | 신규(원예) |
| 신중하오 | 전북   | 전주 | 호성  | 호성           | 35               | 35          | 전주시     | 신규(원예) |
| 용산   | 전북   | 정읍 |     | 교암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백산   | 전북   | 정읍 | 신태인 | 백산           | 34               | 34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오성   | 전북   | 정읍 | 웅동  | 오성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능금   | 전북   | 진안 | 동향  | 능금           | 35               | 35          | 진안군     | 신규(원예) |
| 계서   | 전북   | 진안 | 마령  | 계서           | 40               | 40          | 진안군     | 신규(원예) |
| 반송   | 전북   | 진안 | 백운  | 반송           | 36               | 36          | 진안군     | 신규(원예) |
| 오천   | 전북   | 진안 | 진안  | 오천           | 40               | 40          | 진안군     | 신규(원예) |
| 포동   | 전북   | 진안 | 성수  | 용포           | 38               | 38          | 진안군     | 신규(원예) |
| 전남   | 81지구 |    |     |              | 3,235            | 3,235       |         |        |
| 봉안   | 전남   | 담양 | 무정  | 봉안           | 45               | 45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원예) |
| 용방   | 전남   | 구례 | 용방  | 신도중앙<br>용정용강 | 48               | 48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원예) |
| 덕천   | 전남   | 강진 | 군동  | 덕천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지구명  | 위치 |    |    |     | 수혜면적<br>(ha) | 사업비<br>(억원) | 사업시행예정자 | 비고     |
|------|----|----|----|-----|--------------|-------------|---------|--------|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 와우   | 전남 | 영암 | 시종 | 와우  | 34           | 34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신흥   | 전남 | 영암 | 시종 | 신흥  | 46           | 46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마진   | 전남 | 신안 | 안좌 | 마진  | 43           | 43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용포   | 전남 | 신안 | 안좌 | 읍동  | 39           | 39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기동2  | 전남 | 신안 | 암태 | 기동  | 38           | 38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용산   | 전남 | 고흥 | 두원 | 용산  | 45           | 45          | 고흥군     | 신규(벼)  |
| 가동가상 | 전남 | 고흥 | 도덕 | 가야  | 33           | 33          | 고흥군     | 신규(벼)  |
| 화계   | 전남 | 고흥 | 점암 | 화계  | 40           | 40          | 고흥군     | 신규(벼)  |
| 석정   | 전남 | 고흥 | 금산 | 석정  | 30           | 30          | 고흥군     | 신규(벼)  |
| 묵동   | 전남 | 해남 | 북평 | 서흥  | 42           | 42          | 해남군     | 신규(벼)  |
| 평발   | 전남 | 해남 | 화산 | 평호  | 48           | 48          | 해남군     | 신규(벼)  |
| 금강   | 전남 | 해남 | 송지 | 금강  | 33           | 33          | 해남군     | 신규(벼)  |
| 평용   | 전남 | 무안 | 무안 | 평용  | 38           | 38          | 무안군     | 신규(벼)  |
| 신학   | 전남 | 무안 | 무안 | 신학  | 49           | 49          | 무안군     | 신규(벼)  |
| 지산   | 전남 | 무안 | 삼향 | 지산  | 41           | 41          | 무안군     | 신규(벼)  |
| 유교   | 전남 | 무안 | 삼향 | 유교  | 49           | 49          | 무안군     | 신규(벼)  |
| 창포   | 전남 | 무안 | 청계 | 서호  | 50           | 50          | 무안군     | 신규(벼)  |
| 대박   | 전남 | 무안 | 운남 | 성내  | 36           | 36          | 무안군     | 신규(벼)  |
| 월천   | 전남 | 함평 | 손불 | 월천  | 42           | 42          | 함평군     | 신규(벼)  |
| 금곡   | 전남 | 함평 | 대동 | 금곡  | 48           | 48          | 함평군     | 신규(벼)  |
| 참도   | 전남 | 신안 | 지도 | 봉리  | 49           | 49          | 신안군     | 신규(벼)  |
| 태천   | 전남 | 신안 | 지도 | 태천  | 49           | 49          | 신안군     | 신규(벼)  |
| 유천   | 전남 | 신안 | 자은 | 유천  | 47           | 47          | 신안군     | 신규(원예) |
| 회산   | 전남 | 신안 | 임자 | 이흑암 | 49           | 49          | 신안군     | 신규(원예) |
| 상동   | 전남 | 신안 | 신의 | 상태동 | 49           | 49          | 신안군     | 신규(벼)  |
| 조화   | 전남 | 여수 | 울촌 | 조화  | 47           | 47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장동   | 전남 | 나주 | 동강 | 장동  | 41           | 41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가교   | 전남 | 완도 | 고금 | 청용  | 43           | 43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임천   | 전남 | 강진 | 강진 | 덕남  | 40           | 40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도원   | 전남 | 강진 | 강진 | 학명  | 49           | 49          | 강진군     | 신규(벼)  |
| 구암   | 전남 | 고흥 | 도화 | 구암  | 40           | 40          | 고흥군     | 신규(벼)  |
| 강산   | 전남 | 고흥 | 점암 | 강산  | 46           | 46          | 고흥군     | 신규(벼)  |
| 우산   | 전남 | 고흥 | 포두 | 우산  | 45           | 45          | 고흥군     | 신규(벼)  |
| 중방   | 전남 | 구례 | 용방 | 중방  | 43           | 43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지구명 | 위치 |    |    |     | 수해면<br>적<br>(ha) | 사업비<br>(억원) | 사업시행예정자 | 비고     |
|-----|----|----|----|-----|------------------|-------------|---------|--------|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 청동  | 전남 | 나주 |    | 청동  | 46               | 46          | 나주시     | 신규(벼)  |
| 석해  | 전남 | 나주 | 반남 | 석해  | 42               | 42          | 나주시     | 신규(벼)  |
| 오량  | 전남 | 나주 |    | 오량  | 30               | 30          | 나주시     | 보강(벼)  |
| 담양  | 전남 | 담양 | 담양 | 강쟁  | 48               | 48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학동  | 전남 | 담양 | 담양 | 학동  | 35               | 35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평촌  | 전남 | 무안 | 무안 | 고절  | 31               | 31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교촌  | 전남 | 무안 | 무안 | 교촌  | 30               | 30          | 무안군     | 신규(벼)  |
| 원장1 | 전남 | 무안 | 현경 | 용정  | 31               | 31          | 무안군     | 신규(벼)  |
| 호동  | 전남 | 보성 | 별교 | 호동  | 30               | 30          | 무안군     | 보강(원예) |
| 칠읍  | 전남 | 보성 | 울어 | 칠읍  | 40               | 4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노은  | 전남 | 신안 | 신의 | 하태동 | 44               | 44          | 보성군     | 신규(벼)  |
| 마진  | 전남 | 신안 | 안좌 | 마진  | 43               | 43          | 신안군     | 신규(벼)  |
| 용포  | 전남 | 신안 | 안좌 | 용포  | 39               | 39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탄동  | 전남 | 신안 | 안좌 | 탄동  | 32               | 32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기동2 | 전남 | 신안 | 암태 | 기동  | 38               | 38          | 신안군     | 신규(벼)  |
| 고이  | 전남 | 신안 | 압해 | 고이  | 31               | 31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원예) |
| 매화  | 전남 | 신안 | 압해 | 매화  | 48               | 48          | 신안군     | 신규(원예) |
| 복용  | 전남 | 신안 | 압해 | 복용  | 49               | 49          | 신안군     | 신규(벼)  |
| 조삼  | 전남 | 신안 | 임자 | 조삼  | 34               | 34          | 신안군     | 신규(벼)  |
| 도창  | 전남 | 신안 | 장산 | 도창  | 43               | 43          | 신안군     | 신규(벼)  |
| 팽진  | 전남 | 신안 | 장산 | 팽진  | 35               | 35          | 신안군     | 신규(벼)  |
| 적거  | 전남 | 신안 | 지도 | 광정  | 40               | 40          | 신안군     | 신규(벼)  |
| 봉리  | 전남 | 신안 | 지도 | 봉   | 36               | 36          | 신안군     | 신규(벼)  |
| 연화  | 전남 | 신안 | 지도 | 태천  | 45               | 45          | 신안군     | 신규(벼)  |
| 장춘  | 전남 | 신안 | 팔금 | 장춘  | 35               | 35          | 신안군     | 신규(벼)  |
| 후광  | 전남 | 신안 | 하의 | 후광  | 48               | 48          | 신안군     | 신규(벼)  |
| 녹사  | 전남 | 영광 | 영광 | 녹사  | 33               | 33          | 신안군     | 신규(원예) |
| 송평  | 전남 | 영암 | 영암 | 송평  | 48               | 48          | 영광군     | 신규(벼)  |
| 삼산  | 전남 | 완도 | 금당 | 삼산  | 36               | 36          | 영암군     | 신규(벼)  |
| 화가  | 전남 | 완도 | 약산 | 우두  | 30               | 30          | 완도군     | 신규(벼)  |
| 관산  | 전남 | 장흥 | 관산 | 죽교  | 30               | 30          | 완도군     | 보강(벼)  |
| 인암  | 전남 | 장흥 | 용산 | 인암  | 40               | 4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원예) |
| 월야  | 전남 | 함평 | 손불 | 월천  | 33               | 33          | 장흥군     | 보강(벼)  |
| 덕천  | 전남 | 함평 | 신광 | 백운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지구명   | 위치   |    |    |     | 수해면<br>적<br>(ha) | 사업비<br>(억원) | 사업시행예정자 | 비고     |
|-------|------|----|----|-----|------------------|-------------|---------|--------|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 신계    | 전남   | 함평 | 엄다 | 신계  | 35               | 35          | 함평군     | 신규(벼)  |
| 대덕    | 전남   | 함평 | 함평 | 대덕  | 40               | 40          | 함평군     | 신규(벼)  |
| 신월    | 전남   | 해남 | 복일 | 신월  | 34.1             | 34.1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금강    | 전남   | 해남 | 송지 | 금강  | 33               | 33          | 해남군     | 신규(벼)  |
| 관동    | 전남   | 해남 | 화산 | 관동  | 38               | 38          | 해남군     | 보강(벼)  |
| 월호    | 전남   | 해남 | 화원 | 월호  | 48               | 48          | 해남군     | 신규(벼)  |
| 원호    | 전남   | 해남 | 황산 | 원호  | 30               | 30          | 해남군     | 신규(벼)  |
| 백암    | 전남   | 화순 | 능주 | 백암  | 32               | 32          | 해남군     | 신규(벼)  |
| 유천    | 전남   | 화순 | 동북 | 유천  | 30               | 30          | 화순군     | 신규(벼)  |
| 세청    | 전남   | 화순 | 청풍 | 세청  | 48               | 48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경북    | 35지구 |    |    |     | 1,393            | 1,393       |         |        |
| 용배 앞들 | 경북   | 김천 | 봉산 | 덕천  | 40               | 40          | 김천시     | 신규(원예) |
| 금단    | 경북   | 김천 | 조마 | 강곡  | 32               | 32          | 김천시     | 신규(원예) |
| 묵계1   | 경북   | 안동 | 길안 | 묵계1 | 45               | 45          | 안동군     | 신규(원예) |
| 단호    | 경북   | 안동 | 남후 | 단호  | 45               | 45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오천    | 경북   | 안동 | 호명 | 오천  | 48               | 48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남산    | 경북   | 영덕 | 영덕 | 남산  | 44               | 44          | 영덕군     | 신규(원예) |
| 천전    | 경북   | 영덕 | 영덕 | 천전  | 44               | 44          | 영덕군     | 신규(원예) |
| 부곡    | 경북   | 영덕 | 축산 | 부곡  | 30               | 30          | 영덕군     | 신규(원예) |
| 젓돌    | 경북   | 영주 | 단산 | 병산3 | 30               | 30          | 영주시     | 신규(원예) |
| 하촌    | 경북   | 영주 | 봉현 | 하촌  | 42               | 42          | 영주시     | 신규(원예) |
| 두월    | 경북   | 영주 | 이산 | 두월  | 44               | 44          | 영주시     | 신규(원예) |
| 신암    | 경북   | 영주 | 이산 | 신암  | 46               | 46          | 영주시     | 신규(벼)  |
| 신암2   | 경북   | 영주 | 이산 | 신암  | 40               | 40          | 영주시     | 신규(원예) |
| 이계    | 경북   | 영주 | 이산 | 이계  | 36               | 36          | 영주시     | 신규(벼)  |
| 유표    | 경북   | 예천 | 지보 | 마산  | 48               | 48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서낭    | 경북   | 청송 | 부동 | 이전  | 44               | 44          | 청송군     | 신규(원예) |
| 지동    | 경북   | 청송 | 부동 | 지   | 35               | 35          | 청송군     | 신규(원예) |
| 방화    | 경북   | 포항 | 송라 | 방석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남성    | 경북   | 포항 | 대송 | 남성  | 47               | 47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울동    | 경북   | 경주 | 울동 | 울동  | 46               | 46          | 경주시     | 신규(원예) |
| 연안    | 경북   | 경주 | 외동 | 연안  | 48               | 48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천북    | 경북   | 경주 | 천북 | 모아  | 42               | 42          | 경주시     | 신규(원예) |
| 구담    | 경북   | 안동 | 풍천 | 구담  | 31               | 31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원예) |

| 지구명 | 위치   |    |     |    | 수혜면<br>적<br>(ha) | 사업비<br>(억원) | 사업시행예정자 | 비고     |
|-----|------|----|-----|----|------------------|-------------|---------|--------|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 횡산  | 경북   | 구미 | 고아  | 횡산 | 30               | 30          | 구미시     | 신규(벼)  |
| 대신  | 경북   | 김천 | 아포  | 애신 | 34               | 34          | 김천시     | 신규(벼)  |
| 내지  | 경북   | 영주 | 순흥  | 내지 | 48               | 48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원예) |
| 삼호  | 경북   | 영천 | 금호읍 | 삼호 | 33               | 33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원예) |
| 신대  | 경북   | 영천 | 북안  | 신대 | 43               | 43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원예) |
| 오동  | 경북   | 영천 | 화북  | 오동 | 47               | 47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오대  | 경북   | 상주 | 오대  | 오대 | 35               | 35          | 상주시     | 신규(벼)  |
| 위양2 | 경북   | 의성 | 안계  | 위양 | 43               | 43          | 의성군     | 신규(벼)  |
| 성암2 | 경북   | 의성 | 단북  | 성암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상수월 | 경북   | 예천 | 지보  | 상월 | 33               | 33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월오  | 경북   | 예천 | 용궁  | 월오 | 44               | 44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원예) |
| 본포  | 경북   | 예천 | 호명  | 본포 | 36               | 36          | 예천군     | 신규(벼)  |
| 경남  | 42지구 |    |     |    | 1,647            | 1,647       |         |        |
| 이인  | 경남   | 거창 | 남상  | 대산 | 32               | 32          | 거창군     | 신규(원예) |
| 운평  | 경남   | 거창 | 웅양  | 동호 | 35               | 35          | 거창군     | 신규(원예) |
| 성산  | 경남   | 남해 | 고현  | 대사 | 44               | 44          | 남해군     | 신규(원예) |
| 비란  | 경남   | 남해 | 설천  | 비란 | 40               | 40          | 남해군     | 신규(원예) |
| 오용  | 경남   | 남해 | 창선  | 오용 | 38               | 38          | 남해군     | 신규(벼)  |
| 반월  | 경남   | 밀양 | 초동  | 반월 | 40               | 4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반월  | 경남   | 밀양 | 초동  | 반월 | 38               | 38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석문  | 경남   | 사천 | 곤양  | 대진 | 40               | 4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둔암  | 경남   | 사천 | 사천  | 두량 | 42               | 42          | 사천시     | 신규(원예) |
| 내구  | 경남   | 사천 | 서포  | 내구 | 45               | 45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정동  | 경남   | 사천 | 정동  | 수청 | 45               | 45          | 사천시     | 신규(원예) |
| 두곡  | 경남   | 산청 | 신등  | 단계 | 44               | 44          | 산청군     | 신규(벼)  |
| 상정  | 경남   | 산청 | 신안  | 하정 | 48               | 48          | 산청군     | 신규(벼)  |
| 감암  | 경남   | 의령 | 부림  | 감암 | 43               | 43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원예) |
| 대곡  | 경남   | 의령 | 부림  | 대곡 | 33               | 33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대곡  | 경남   | 의령 | 부림  | 대곡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원예) |
| 정암  | 경남   | 의령 | 의령  | 정암 | 45               | 45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월아  | 경남   | 진주 | 대곡  | 와룡 | 49               | 49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원예) |
| 월아1 | 경남   | 진주 | 대곡  | 월아 | 49               | 49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원예) |
| 예상  | 경남   | 진주 | 정촌  | 예상 | 30               | 30          | 진주시     | 신규(원예) |
| 금평1 | 경남   | 진주 | 지수  | 압사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원예) |

| 지구명 | 위치   |     |    |    | 수혜면<br>적<br>(ha) | 사업비<br>(억원) | 사업시행예정자 | 비고     |
|-----|------|-----|----|----|------------------|-------------|---------|--------|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 성사  | 경남   | 창녕  | 남지 | 성사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원예) |
| 법사  | 경남   | 창녕  | 도천 | 우강 | 43               | 43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학포  | 경남   | 창녕  | 부곡 | 학포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모곡  | 경남   | 창녕  | 이방 | 모곡 | 47               | 47          | 창녕군     | 보강(벼)  |
| 동정1 | 경남   | 창녕  | 장마 | 동정 | 34               | 34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신촌  | 경남   | 창원  | 북  | 외산 | 40               | 40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대치  | 경남   | 하동  | 금남 | 대치 | 40               | 40          | 하동군     | 신규(벼)  |
| 동산  | 경남   | 하동  | 적량 | 동산 | 40               | 4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삼각지 | 경남   | 함안  | 가야 | 말산 | 35               | 35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사촌  | 경남   | 함안  | 대산 | 대사 | 49               | 49          | 함안군     | 신규(벼)  |
| 칠서  | 경남   | 함안  | 칠서 | 천계 | 35               | 35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벼)  |
| 목현  | 경남   | 함양  | 유림 | 유평 | 35               | 35          | 함양군     | 신규(원예) |
| 백일  | 경남   | 함양  | 지곡 | 백일 | 30               | 30          | 함양군     | 신규(원예) |
| 삼산  | 경남   | 함양  | 함양 | 삼산 | 30               | 30          | 함양군     | 신규(원예) |
| 신천  | 경남   | 함양  | 함양 | 신천 | 30               | 30          | 함양군     | 신규(원예) |
| 덕정  | 경남   | 합천  | 대양 | 덕정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양전  | 경남   | 합천  | 삼가 | 양전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성산  | 경남   | 합천  | 쌍책 | 다라 | 30               | 30          | 한국농어촌공사 | 보강(원예) |
| 와리  | 경남   | 합천  | 율곡 | 와  | 43               | 43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율진  | 경남   | 합천  | 율곡 | 율진 | 43               | 43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양진  | 경남   | 합천  | 청덕 | 양진 | 47               | 47          | 한국농어촌공사 | 신규(벼)  |
| 제주  | 15지구 |     |    |    | 586              | 586         |         |        |
| 무릉  | 제주   | 서귀포 | 대정 | 무릉 | 49               | 49          | 서귀포시    | 신규(원예) |
| 시흥  | 제주   | 서귀포 | 성산 | 시흥 | 32               | 32          | 서귀포시    | 신규(원예) |
| 토산1 | 제주   | 서귀포 | 표선 | 토산 | 47               | 47          | 서귀포시    | 신규(원예) |
| 하천2 | 제주   | 서귀포 | 표선 | 하천 | 45               | 45          | 서귀포시    | 신규(원예) |
| 법환  | 제주   | 서귀포 |    | 법환 | 41               | 41          | 서귀포시    | 신규(원예) |
| 색달2 | 제주   | 서귀포 |    | 색달 | 37               | 37          | 서귀포시    | 신규(원예) |
| 용흥  | 제주   | 서귀포 |    | 용흥 | 34               | 34          | 서귀포시    | 신규(원예) |
| 월평  | 제주   | 서귀포 |    | 월평 | 32               | 32          | 서귀포시    | 신규(원예) |
| 종달  | 제주   | 제주  | 구좌 | 종달 | 43               | 43          | 제주시     | 신규(원예) |
| 곽지  | 제주   | 제주  | 애월 | 곽지 | 36               | 36          | 제주시     | 신규(원예) |
| 와산  | 제주   | 제주  | 조천 | 와산 | 41               | 41          | 제주시     | 신규(원예) |
| 와흘  | 제주   | 제주  | 조천 | 와흘 | 39               | 39          | 제주시     | 신규(원예) |

| 지구명 | 위치 |    |    |    | 수혜면<br>적<br>(ha) | 사업비<br>(억원) | 사업시행예정자 | 비고     |
|-----|----|----|----|----|------------------|-------------|---------|--------|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 고산1 | 제주 | 제주 | 한경 | 고산 | 44               | 44          | 제주시     | 신규(원예) |
| 한수  | 제주 | 제주 | 한림 | 한수 | 31               | 31          | 제주시     | 신규(원예) |
| 외도  | 제주 | 제주 |    | 외도 | 35               | 35          | 제주시     | 신규(원예) |

## 2. 농촌용수개발사업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계획)

| 지구명         | 수계명 | 위치 |     | 수혜면적<br>(ha) | 사업비<br>(억원) | 비고 |
|-------------|-----|----|-----|--------------|-------------|----|
|             |     | 시도 | 시군  |              |             |    |
| 총 계         | 44  |    |     | 1,758.4      | 3,020.6     |    |
| 차곡          | 한강  | 충북 | 음성군 | 39.0         | 60.0        |    |
| 창말          | 한강  | 강원 | 홍천군 | 43.2         | 119.3       |    |
| 오리          | 낙동강 | 경북 | 영양군 | 46.0         | 70          |    |
| 양구          | 낙동강 | 경북 | 영양군 | 40.0         | 65          |    |
| 용화<br>(항골지) | 낙동강 | 경북 | 영양군 | 47.2         | 75.5        |    |
| 토곡          | 낙동강 | 경북 | 영양군 | 35.0         | 70          |    |
| 행화<br>(납데기) | 낙동강 | 경북 | 영양군 | 41.5         | 75.5        |    |
| 배방          | 낙동강 | 경북 | 안동시 | 49.0         | 102.9       |    |
| 신흥          | 낙동강 | 경북 | 안동시 | 49.0         | 174.3       |    |
| 금곡          | 낙동강 | 경북 | 의성군 | 38.0         | 53.5        |    |
| 귀미          | 낙동강 | 경북 | 안동시 | 48.0         | 100.8       |    |
| 덕봉          | 낙동강 | 경북 | 의성군 | 35.0         | 35.0        |    |
| 질골          | 낙동강 | 경북 | 영주시 | 40.0         | 96          |    |
| 사천          | 낙동강 | 경북 | 안동시 | 48.0         | 100.8       |    |
| 천향          | 낙동강 | 경북 | 예천군 | 41.0         | 92          |    |
| 무곡          | 낙동강 | 경북 | 상주시 | 40.0         | 111.6       |    |
| 화곡          | 낙동강 | 경북 | 의성군 | 31.0         | 12.4        |    |
| 상리          | 낙동강 | 경북 | 의성군 | 34.0         | 31.1        |    |
| 하대          | 낙동강 | 경북 | 김천시 | 49.0         | 114.9       |    |
| 대야          | 낙동강 | 경북 | 김천시 | 46.0         | 88.4        |    |
| 마산          | 낙동강 | 경북 | 김천시 | 38.0         | 84.0        |    |
| 금평          | 낙동강 | 경북 | 김천시 | 39.8         | 95          |    |
| 노곡          | 낙동강 | 경북 | 김천시 | 32.8         | 59.7        |    |
| 마곡2         | 낙동강 | 경북 | 김천시 | 36.9         | 75.0        |    |
| 곡송          | 낙동강 | 경북 | 김천시 | 36.9         | 98.5        |    |
| 명리          | 낙동강 | 경북 | 성주군 | 32.0         | 65.2        |    |

| 지구명  | 수계명   | 위치 |     | 수혜면적<br>(ha) | 사업비<br>(억원) | 비고 |
|------|-------|----|-----|--------------|-------------|----|
|      |       | 시도 | 시군  |              |             |    |
| 황곡   | 낙동강   | 경북 | 영천시 | 30.0         | 57          |    |
| 남양2  | 낙동강   | 경북 | 김천시 | 36.1         | 56.6        |    |
| 금봉   | 낙동강   | 경북 | 성주군 | 48.0         | 72          |    |
| 육통들  | 형산강   | 경북 | 경주시 | 40.0         | 25          |    |
| 원본신  | 낙동강동해 | 경북 | 영양군 | 49.0         | 83.8        |    |
| 아곡   | 낙동강동해 | 경북 | 영덕군 | 48.0         | 62.4        |    |
| 신곡   | 금강    | 경북 | 상주시 | 49.0         | 98          |    |
| 효곡   | 금강    | 경북 | 상주시 | 32.0         | 64          |    |
| 부릉   | 금강    | 충북 | 영동군 | 50.0         | 67.5        |    |
| 대양   | 금강    | 충남 | 부여군 | 30.0         | 60          |    |
| 강수   | 금강서해  | 충남 | 서산시 | 37.0         | 30          |    |
| 부남마룡 | 금강서해  | 충남 | 서산시 | 40.0         | 30          |    |
| 창기   | 금강서해  | 충남 | 태안군 | 33.0         | 30          |    |
| 죽림   | 금강서해  | 충남 | 보령시 | 43.0         | 30          |    |
| 신송   | 금강서해  | 충남 | 보령시 | 41.0         | 30          |    |
| 화성   | 금강서해  | 충남 | 부여군 | 30.0         | 30          |    |
| 호암   | 섬진강   | 전북 | 임실군 | 30.0         | 21.7        |    |
| 사계   | 섬진강   | 전북 | 장수군 | 36.0         | 46.2        |    |